

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(제95조제2항제3호 관련)
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

구 분		기 준 면 적
특 별 시		24,930㎡
광 역 시	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	11,054㎡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7,291㎡
	인구 200만명 미만	5,174㎡
특별자치시		4,889㎡
도	경기도	29,164㎡
	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	12,700㎡
	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	11,524㎡
	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	9,878㎡
특별자치도		8,467㎡

2. 시,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

구 분			기 준 면 적
시		인구 10만명 미만	1,853㎡
		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	2,257㎡
		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	3,351㎡
		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3,429㎡
		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	4,713㎡
		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	4,851㎡
		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	6,209㎡
		인구 100만명 이상	6,597㎡
군	도의 군	인구 3만명 미만	1,358㎡
		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	1,506㎡
		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	1,787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,830㎡
		인구 15만명 이상	1,996㎡
	광역시의 군	인구 10만명 미만	1,358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,698㎡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2,581㎡
		인구 50만명 이상	4,172㎡
자 치 구	특별시의 자치구	인구 50만명 미만	2,961㎡
		인구 50만명 이상	4,172㎡
	광역시의 자치구	인구 10만명 미만	1,358㎡
		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	1,698㎡
		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2,581㎡

	인구 50만명 이상	4,172m ²
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비고

1.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.
 - 가. 지하주차장·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
 - 나. 도서관,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
 - 다. 재난상황실,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
 - 라.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·수익하는 면적
2.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